

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031호

나. 발 의 자 : 남창진 의원(찬성자 52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08월 14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08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규정하고,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.
-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조의2).
- 나.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함(안 제6조제2항제2호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규정하고,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발의됨.

나. 고향사랑기부제 개요

- 가속화되는 지역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와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고향세 도입 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됨.
- 이에 고향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내 특산품·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고향기부금법”)이 제정(2021.10.19.)·시행(2023.1.1.)됨.
- 이러한 “고향기부금법”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고,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일정액을

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임.

- 그리고 기부금은 지역 거주자의 복리 증진과 지역 문제 해결 등 지역 활성화에 사용되고, 기부자에게는 연간 10만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%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이 주어짐.

< 고향사랑기부제 세부내용 >

- ▶ (개인)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, (지방자치단체) 복리증진사업에 활용
- ▶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% 세액공제, 10만원 초과 시 16.5% 세액공제, 500만원 한도
- ▶ 기부금액의 30% 범위에서 3만원대 답례품(지역 내 특산물·상품권 등) 제공

- 한편,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2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선정과 “고향기부금법”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의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고향사랑조례”)를 제정·시행(2023.1.1.)하고 있음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1) ‘고향사랑의 날’ 규정(안 제1조의2 신설)

- 동 개정안은 ‘고향사랑의 날’을 지정하고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

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“고향기부금법”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2023.7.4. 시행)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신 설></p> | <p>제1조의2(고향사랑의 날)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.</p> |

- 참고로 안 제1조의2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향사랑의 날을 매년 9월 4일로 지정하고 있는바, 이는 고향 사랑의 각 첫 음과 유사하여 기억하기 쉽고, 9월은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추석과 주로 함께하는 달이며,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는 사(思.)의 의미가 담겨 있어 대국민 공모¹⁾를 통해 선정된 것임.

2)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추가(안 제6조 제2항제3호)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고향사랑 기부금 위탁사무

1)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3일 개정된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지정 근거 마련 후 대국민 공모(2023.2.9.~3.2.)를 거쳐 1차 국민제안과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▶7월 4일, ▶7월 7일, ▶9월 1일, ▶9월 4일, ▶10월 19일 5개 후보 일자 선정 후 3차 대국민 투표를 통해 3,996명(42.3%)이 투표한 9월 4일을 최종 선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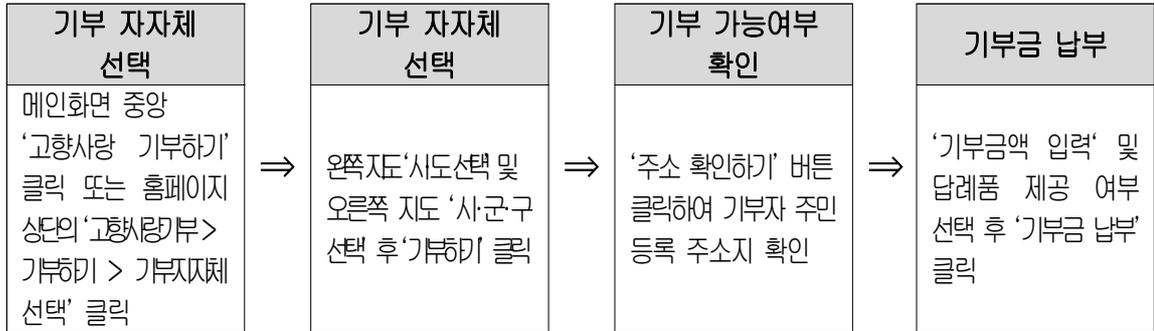
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.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3.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<u>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</u> 의 확인 4.·5. (생 략) | 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초본,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</u> ----- 4.·5. (현행과 같음) |

- 이는 외국국적동포²⁾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“고향기부금법”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할 것임.
- 참고로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을 보내거나 답례품 주문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플랫폼인 ‘고향사랑 e음’에 회원가입하고 기부 지자체를 선택한 후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.
- 그러나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외국국적동포들은 기부를 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어 왔음.

2)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

<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e음 활용 온라인 기부 절차 >



- 따라서 동 개정안은 외국인동포들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임.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담당 조사관 | 연락처 |
| 김용우 | 02-2180-8062 |